

(붙임1)

「한국은행 목포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전부개정(안)

I 전부개정 필요성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업무 프로세스 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 제·개정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운용기준을 전부개정

* <참고1>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업무프로세스 개편에 따른 규정 제·개정 내용(요약)
<참고2>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프로세스
<참고3>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변동 내용

II 주요 개정내용

- 운용기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문을 목적(제1조), 지원대상(제2조), 사후 심사 자료제출(제3조), 평가관리 기준(제4조), 기타 사항(제5조)으로 편제
- 지역본부 운용기준의 공통사항을 세칙 및 절차에 명시함에 따라 관련 운용기준 조항 삭제(현행 운용기준 제2조 ~ 제13조)
- 기타 세칙 및 절차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 지원대상 제외업종 확대
 - 주차장 운영업, 일반 교습학원,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추가 (개정안 <별표2>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
 - 복수업종 영위 업체의 주업종 판단 기준, 각종 인증 기업의 인증서 유효기간 판단 기준 명시(개정안 <별표1> 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 각주)
 - 사후심사 자료제출 목록 명시(개정안 제3조)
 - 운용기준 표준안에 '주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 평가관리 기준* 명시(개정안 제4조)

— 금리 감면폭(30%), 제출자료의 정확성(30%), 제출기한 준수 여부(20%), 규정 준수 여부(20%)

Ⅲ 시행일

시행일 : 2024년 4월 1일(은행 대출취급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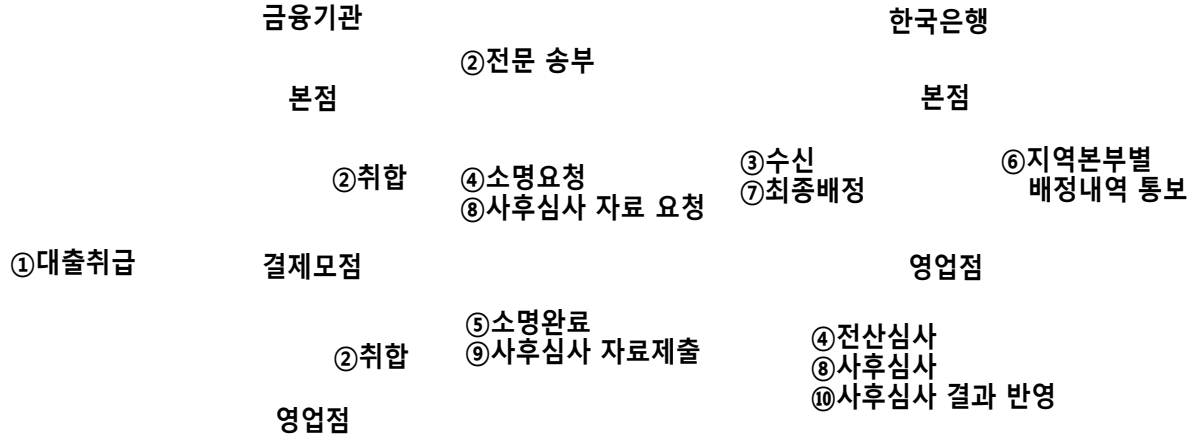
<참고1>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업무프로세스 개편에 따른 규정 제·개정 내용(요약)

- ① **(지역본부별 상이한 규정 일원화)** 전문 송수신 및 전산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역본부 운용기준별로 상이한 **자료제출 마감일**(매월 15일), **대출 종류 및 만기**(운전 1년·시설 5년 이내), **지원일몰제**(예외조항 삭제) 등을 **일원화**하여 상위규정에서 관리<절차>
- ② **(사후심사 도입)** C2 대출취급실적에 대한 **사전심사**(배정 전)를 '건별 실물자료 육안심사'에서 '**전산심사**'로 간소화하는 동시에 **사후심사**(배정 후) 절차를 **도입**하여 **중층적 심사체계**를 구축
 - 각 지역본부는 매월 첫 영업일 배정 이후 **기배정된 대출취급실적을 임의 추출***한 뒤, 해당 대출관련 자료를 5영업일 이내에 제출받아 규정 위반여부를 확인<절차>
 - * 임의 추출 건수는 '신규 대출실적의 30% 및 기존 대출잔액의 3%'로 설정하되, 필요시 운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통화정책국장이 변경할 수 있음
- ③ **(지역본부의 평가관리 권한 부여)** 한도 배정시 대출취급실적 이외에 **지역본부의 금융기관 평가결과도 반영**<절차>
 - 각 지역본부는 관할지역 금융기관 결제모점에 대해 **금리 감면폭, 제출자료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A·B·C 등급**으로 평가**(<매분기>)
 - * 각 지역본부장은 평가관리 항목 및 비중을 정하여 운용기준에 명시
(예 : 금리감면폭 30% 제출자료의 정확성 30% 제출기한 준수여부 20% 규정 준수 여부 20%)
 - ** 해당 지역 전체 결제모점 중 A등급에 해당하는 결제모점은 20% 이하, B등급은 60% 이상, C등급은 20% 이하가 되도록 배분
 - 분기 중 평가등급이 **C등급**인 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분기 월별 배정액의 **10%**를 차감하고, 동 차감액을 **A등급**(A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B등급)인 금융기관의 배정액에 **가산**
- ④ **(기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지원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제외업종을 추가하는 한편,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기타 불분명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세칙 및 절차>
 - 각 지역본부 관할지역 소재(및 서울지역) 금융기관이 **관할지역 소재 업체**에 대해 취급한 **대출실적만 지원**(관할지역 외 소재 업체에 대한 대출실적은 배제)
 - 현행 운용기준(표준안)상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C2 운용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추가***하여 절차에 명시
 - * (현행) 주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업, 병·의원 등 (추가) 주차장 운영업 일반 교습학원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등
 - 현행 규정에서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었던 신용등급 제한, 대출기간 계산방법, 인증서 등의 유효기간 판단 기준, 복수업종 영위 업체에 대한 주된 업종 판단 기준 등을 **명확화**

<참고2>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프로세스



- ① 해당월(T월) 중 금융기관(영업점, 결제모점, 본점)이 지원대상 업체에 대출취급
- ② 금융기관 본점에서 대출취급실적 취합 및 검증 후 익월(T+1월) 15일까지 전문 송부
- ③ 한국은행 본부(금융업무실)에서 금융기관 전문 수신 처리 및 형식오류 발생건 재송신 처리
- ④ 각 지역본부에서 해당 대출취급분에 대해 전산심사 실시 후, 위규 대출건에 대해 해당 결제모점 앞 소명요청
- ⑤ 해당 결제모점은 소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소명절차 완료
- ⑥ 각 지역본부에서 전산심사 결과, 평가관리, 제재조치 등을 반영하여 배정 실시 후 동 결과를 통화정책국 앞 통보
- ⑦ 한국은행 본부(통화정책국)에서 배정 처리 완료 후 각 지역본부에 최종 배정액 통보
- ⑧ 배정 이후 각 지역본부는 기배정된 대출취급실적을 임의 추출하여 사후심사 대상목록을 생성하고 해당 결제모점 앞 자료를 요청하여 사후심사 실시
- ⑨ 해당 결제모점은 자료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내에 자료제출을 완료
- ⑩ 각 지역본부는 사후심사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익익월(T+2월) 배정시 반영

<참고3>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변동 내용

	현행 운용기준		개정 규정(2024. 4. 1. 이후)
중소기업 소재지	목포본부 관할지역	기타지역 (서울제외)	목포본부 관할지역
금융기관 소재지	목포본부 관할지역 및 서울	목포본부 관할지역	목포본부 관할지역 및 서울
지원대상대출	특별지원부문: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전략·일반지원부문: 지원기간 1년 이내 운전자금, 3년 이내 시설자금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또는 만기 5년 이내 시설자금 (전 지원부문에 통일적으로 적용)
주된업종 판단기준	매출액,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된 업종을 판단
제외업종	부동산업, 주점업 등		확대 (주차장 운영업, 일반 교습학원,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추가)
전략지원부문 신용등급	일반지원부문으로 전환 시 신용등급 4등급 이하만 허용		일반지원부문으로 전환 시에도 신용등급 제한 없이 지원 가능
일몰제 관련	누적지원기간 5년(기산일: 2007.1.1.) 초과시 2년간 지원 중단 * 예외: 연환산 월평균 누적지원액 30억원까지는 지원 가능		누적지원기간 5년(기산일: 2021.4.1.) ¹⁾ 초과시 2년간 지원 중단 * 예외 없음 (→ 2026.4.1.부터 최초 일몰 도래)
사전심사 시 소명기한	-		소명 요청 후 3영업일 이내 (요청일 포함 시 제4영업일)
사후심사 자료제출일	-		자료 요청 후 5영업일 이내 (요청일 포함 시 제6영업일)
심사 시 제출자료	대출금원장, 사업자등록증(명), 입증서류(인증서등), 기타서류		금리산출표, 주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평가관리 관련	-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²⁾ ① 금리 감면폭(30%) ② 제출자료의 정확성(30%) ③ 제출기한 준수 여부(20%) ④ 규정준수 여부(20%)

주: 1) 대출취급일 기준
2) 세부 기준 추후 공지 예정